

#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상담기록부

상담일시	2020.5.14.	상담장소	감사담당관실
신청자	ㄱㄱㄱ	상담자	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
상담유형	부정청탁 / 금품수수 / 외부강의 / 기타		
상담내용	<p>(질의) 패널로 참석 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와 사례금 범위 문의</p> <p>(답변)</p> <p>○ 직무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의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고, 사례금은 1시간 까지 40만원, 1시간 초과일 경우 최대 60만원까지이며, 사례금지금 기준은 별표2와 같음.(별표2 별도 메일송부)</p> <p>*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</p>		
비고			